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적인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
- 비밀누설의 금지를 명확히 함(안 제10조)
-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난임부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, 인 용법령을 정비 함.(안 제2조 제5호, 제6호, 제8호)

### 3. 관계법령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, 제11조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임신·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,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  -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“난임”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.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관련 정책 추진·발굴 등의 노력을 명시함.
  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

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,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

- 안 제7조에서는 난임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8조에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·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 조치 하도록 함.
-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함.
- 난임의 원인으로서는 늦어지는 결혼나이, 취업난, 경제여건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술, 담배의 생활습관, 기름진 식단, 운동부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생식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난임부부는 약 15%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
- 의학계에서는 그 중 남성의 원인비율을 40%로 보고 있다고 알려줘 있어 남성들의 소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모자보건법」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